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44

발의연월일: 2024. 10. 23.

발 의 자:윤준병・이병진・임미애

이기헌 • 박희승 • 강준현

박홍배 • 민병덕 • 정동영

민형배 · 신영대 · 박민규

서영교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농수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또는 원산지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자에게 시정명령이나거래행위금지 처분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배달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입점한 음식업체가 배달하는 음식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심지어 이러한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음식업체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 같은 배달앱은 통신판매중개업체로서 입점 음식점과 소비

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작 소비자의 알권리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 임.

이에 입점업체(통신판매의뢰자)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배달앱 등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여 온라인상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법률 제 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6조의 제목 중 "금지"를 "금지 및 필요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해당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대상으로 원산 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거짓 표시 등의 <u>금지</u>) ①	제6조(거짓 표시 등의 <u>금지 및</u>
~ ⑤ (생 략)	<u>필요한 조치</u>) ①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
	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
	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업자는 해당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
	다)에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
	라 한다)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
	록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대상
	으로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18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의3.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대상
	으로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
	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u>자</u>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